

law Church

# 교회법

학술논문 / 법관

www.churchlaw.co.kr law134@naver.com (031) 984-9134

통권 제27호

교회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 고찰  
재판받으신 예수님  
총신대학교와 안양대학교의 학교법인 정관 비교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선포되어야 함에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와 교단 노회와 총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참으로 불행한 일임에 틀림없다.  
이제 교회는 예방을 위해 각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THE KOREA INSTITUTE OF CHURCH LAW



월간

# 교회법

통권 제27호

발행인 : 소재열

발행처 : 한국교회법연구소

등록 : 김포,라00029

인쇄인 : 한명훈

발행일 : 2024. 2. 15.

주소 : 김포시 태장로 780  
(베네치아아침 1208)

전화 : (031) 984-9134

홈페이지 <http://churchlaw.co.kr>

기업은행 657-020624-04-018

(예금주 : 한국교회법연구소)

-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 고찰 / 소재열 목사
- 재판받으신 예수님 / 김순정 목사
- 총신대학교와 안양대학교 법인정관 비교
- 대법원, 교회 정관변경=교단탈퇴 정족수 민법 제42조 1항 단서조항 적용 판례

지금까지 발행한 모든 내용은 한국교회법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근거하여 부르심과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고백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이러한 신앙고백위에 세워졌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들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고백이 있어야 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어야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생명의 원천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령의 사역이며, 그 성령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개케 하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한다. 이는 믿음이 없는 신앙고백은 불가능하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성령은 교회의 지체들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주하셔서 교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래서 교회를 성령의 전 혹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엡 5:23),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자기의 지체로 삼아 자기의 몸을 이루셨다(엡4:15-16).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이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은혜로 자란다. 교회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과 같이 양육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선포되어야 함에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와 교단 노회와 총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참으로 불행한 일임에 틀림없다. 이제 교회는 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나는 진정한 신자인가?

# 교회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 고찰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및 총회 결의를 중심으로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 목 차

- |                        |                      |
|------------------------|----------------------|
| 1. 서론 - 문제제기           | 4) 임시 당회장의 권한        |
| 2. 교단 헌법의 교회 대표자       |                      |
| 1) 교단 헌법 교회 정관의 대표자 규정 | 4. 대리 당회장            |
| 2) 교회 정관상 대표자          | 1)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의 대리권  |
| 3) 대표자 유지에 관한 규정       | 2) 대리 당회장의 시무 기간     |
|                        | 3) 대리 당회장 재판권한       |
| 3. 임시 당회장              |                      |
| 1) 임시 당회장의 시무 기간       | 5. 시무목사 계속 청빙 청원 당회장 |
| 2) 임시 당회장 파송 주체        | 6. 결론                |
| 3) 개임(改任)의 법률개념 위반의 문제 |                      |

### <요약>

교회를 말할 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말한다. 지상의 교회는 유형교회로서 조직과 정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법이 필요하다. 성경의 원리에서 인출된 교회법은 교회를 바르게 운영하는데 중요한 원리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된 전국교회는 교회를 운영하는 규칙들이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교회 모든 구성원을 구속한다. 교회는 유형교회로서 집합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집합체로서 교회는 대표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 대표자를 우리는 담임목사로 상정한다. 담임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당회장과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노회 파송이 아닌 당회 결정으로 당회장이 대리 당회장을 청하여 회무를 진행하게 한다. 담임목사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담임목사 없는 경우에 누가 임시 대표자가 되며, 당회 또는 공동의회를 소집하는가? 교단 헌법은 임시 당회장이라고 한다. 임시 당회장은 지교회와 의논하지 않고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한다. 임시 당회장이 정치 교권으로 지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교인에 의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는 없는가? 이러한 법리가 대법원 판례로 확충되면서 교회를 정치 교권 끈들로부터 보호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 소재열 목사 / 총신대학교 목회박사원, 미국 리폼드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D.Min., 교회법), 갈빈대학교(Ph.D., 한국교회사), 조선대학교 법학석사, 법학박사(민법), 현재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사당교회 담임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헌법 개정위원이며, 갈빈대학교 겸임교수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회법을 강의한 바 있다. 저서로 『합리적인 당회운영』, 『장로교 신학적 전통』, 『교회 정관법 총칙』 『장로회 헌법 정치 해설』, 『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해설』, 『교회의 표준 회의법』, 『교회의 적법절차』, 『신비의게시 로마서』, 『법 앞에 선 한국교회』 외 다수가 있다.

## 1. 서론 - 문제제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체계에서는 근본 조직과 원리가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개별 지교회와 일정한 지역의 개별교회 중심의 노회가 있다. 노회의 상회로 총회가 있는데 총회는 노회가 목사와 장로 동수로 파송한 총대로 구성한다. 이러한 제도를 3심제도라고 한다. 장로회 정치는 3심제 치리회 제도를 두며 발전시켜왔다. 총회는 노회를 통하지 않고 개별교회로부터 직접 청원을 받지 못한다. 개별교회는 소속 노회에 청원하며, 노회를 통해 총회에 청원한다. 교회의 청원에 의해 노회는 개별지교회를 지도 관리한다. 특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만, 치리회 제도로서 장로회 정치원리는 일정한 자치 규범이 존재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넓은 개념의 칭호이며, 그 장로회 안에 개별교회와 당회가 존재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존재한다. 교회, 노회, 총회는 그 명칭 앞에 ‘대한예수교장로회’라는 명칭을 붙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에 교회와 노회, 총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헌법이 있다. 이 ‘헌법’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혹은 ‘교단 헌법’이라 한다. 이 헌법을 ‘총회 헌법’이라 하지 않는다. 헌법은 교회와 노회, 총회에 적용된다. 지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자신들의 자치법규에 준한 규범으로 받아들이며 운영한다.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할 경우, 그 교단 헌법을 자치법규에 준한 규범으로 삼는데 특별히 교단 헌법 외에 별도로 ‘교회 정관’이라는 자치법규를 두어 운영한다. 교회인 종교단체는 국가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국가의 각종 법령에 따라 운영된다. 국가 법령안에서 운영하는 교회는 반드시 필수사항으로 독립적인 자치법인 정관

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관으로 국가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교회 정관을 자치법규로 제정 및 변경할 때 교단 헌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다. 종교 내부적으로, 혹은 교단 내부적으로는 개별교회는 소속 교단의 헌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 정관은 교단 헌법과 상당한 부분 충돌되고 있다. 그러한 충돌은 교단 내부적으로 분쟁이 심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단 내부적으로 충돌 때 교단 헌법을 기준으로 지교회 정관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지만, 국가 법령이나 법원은 그러한 교단 내부적인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그 이유는 교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에 의해 집합체를 구성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 때문이다. 자치법규인 정관 제정은 자기 결정권으로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소속 노회나 교단도 그 권리와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소속 교단이 교회 정관과 충돌한 교단 헌법을 내세워 갑질하는 행위는 국가 실정법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단지 교회 정관상 관련 규정이 없는 내용에 대해 지교회 자율권은 교단 헌법과 교단의 자율권에 제한받아야 한다며 교단의 자율권을 교회 자율권에 우선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지교회 정관상 관련 규정이 교단의 자율권 또는 교단 헌법과 충돌할 때 교회 정관을 우선하여 판단한다. 이러한 법적 개념은 교회와 교단과의 충돌을 중국적으로 해결하는 판례법리로 한국교회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법적 고찰에 근거하여 지교회의 대표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교회의 분쟁 중에 가장 많은 부분 중의 하나인 지교회 대표권에 대한 문제가 핵심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대표자 문제는 교회 정관으로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이는 분쟁 예

방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교회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 대표권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 본고는 교회 대표자와 관련한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에 관해 살피는데 있다.

## 2. 교단 헌법의 교회 대표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이하 ‘교단 헌법’이라 한다)은 담임목사를 해당 교회 대표자로 상정한다. 원래 교단 헌법에는 담임목사가 교회 대표자라는 규정이 없었다. 교단총회에서 담임목사를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법률행위를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단의 증명서가 아닌 교단 헌법이나 교회 정관에 담임목사가 교회 대표자라는 규정이 필요했다. 부동산 등기 등 실정법이나 제3자를 상대로 대표자의 법률행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교단 헌법이나 교회 자치법규인 정관에 분명히 이를 명시해야 한다.

### 1) 교단 헌법 교회 정관의 대표자 규정

교회가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인 대표자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일차적인 적용은 교회 정관이지만, 교회 정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때는 자치법규에 준한 규약으로 삼고 있는 교단 헌법을 적용한다. 단지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 규정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자치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경우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법리는 교회 정관을 우선하여 판단한다.<sup>1)</sup>

이러한 법리에 의해 교회 정관에 교회 대표자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는 교단 헌법의 대표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은 교단 내부적으로 교단 헌법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지만, 이러한 충돌 문제가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때는 교단 헌법보다 교회 정관을 우선하여 판단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교단은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될 때 교회 정관을 무력화시키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비록 충돌될지라도 그러한 정관이 존재한 이상 정관 내용을 무시하지 않고 균형 있게 판단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로 분쟁이 심화할 때 당연히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때 법원은 교단 내부적인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회 정관에 대표자에 관한 규정과 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정관을 해당 교회와 교인들을 구속하므로 이러한 정관을 무시할 수 없다. 비록 새로 부임한 담임목사일지라도 정관의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교단 헌법 내용만을 고집한다면, 해당 교회에서 계속 묵회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일단 정관 규정대로 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교단 헌법과 충돌된 부분은 추후 당회와 교인들을 설득하여 정관을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설득이 되지 않을 때 무리하게 정관을 개정하려고 하면 교회는 분쟁 가운데 빠질 수 있다.

교단 헌법에는 누가 대표자인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대표자 규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 따라 총회(합동)는 2018년 개정헌법을 공포할 때 대표자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교단 헌법을 개정하였으며(정치편 제9장) 대표자(당회장)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소재열 목사의 『교회의 적법절차』,

『법 앞에 선 한국교회』 참조.

### 제1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 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행 14:23, 딤후 1:5)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 제2조 당회의 성수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 제3조 당회장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 제4조 당회 임시 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교회 집행기관으로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교인들의 대표인 “치리 장로”로 조직한다. 당회는 당회장과 당회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당회 회집이 불가능하며, 당회장은 반드시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되며, 그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라고 규정한다.

정리하면 교회 담임 목사는 첫째, 지교회 청빙과 소속 노회의 파송을 받아야 하며, 둘째, 담임목사는 당회장이 되며, 셋째, 당회장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넷째, 담임목사는 교회 대표자이다. 당회장을 당회원 가운데 선출하는 개념이 아닌 담임목사가 의례히 당회장이 되며,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교회 대표자가 된다.

## 2) 교회 정관상 대표자

교단 헌법은 교회 대표자는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대표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회 정관에 담임목사가 교회 대표자라는 규정이 없을지라도 교단 헌법 규정이 지교회에 적용된다. 그러나 교회 정관에도 “본 교회 대표자로서 담임 목사”라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담임목사의 교회 대표자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후술한 바와 같은 교회 부동산 등기와 사업자 번호의 대표자 문제와 연동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 3) 대표자 유지에 관한 규정

지교회 담임 목사는 지교회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에서 청빙을 받은 후 노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서 지교회 청빙은 있으나 소속 노회가 승인을 거부한 경우가 있다. 이때 대표자의 효력 문제가 발생한다.

지교회 담임 목사의 임면권(任免權)은 지교회에 있지 않고 소속 노회에 주어진 고유권한이다. 노회가 지교회 담임 목사를 임명할 때는 임의로 하지 못하고 오직 지교회의 청빙 청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담임 목사 승인 철회나 목사직 상실에 해당한

면직 처분의 경우, 담임목사직이 상실된다. 이러한 상실은 지교회 교인들의 의지와 무관하다. 결국 소속 노회가 해당 교회에 담임 목사에 대해 권징재판으로 목사직 면직 처분할 때 지교회 의지와 무관하게 담임 목사직이 상실된다.

이러한 교단 헌법에 근거한 담임목사 임면권은 지교회에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지교회 정관에도 다음과 같이 달리 규정될 때 문제는 달라진다.

“본 교회 담임목사에 관해 소속 노회가 시벌하거나 대표권을 박탈할지라도 공동의회를 통해 결의되지 않으면 여전히 대표자 지위가 유지된다.”

이와 같은 교회 정관 규정이 있을 때 지교회와 무관하게 소속 노회가 담임 목사의 대표자의 지위를 박탈하고 임시 당회장(임시 대표자)을 파송하여 교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역시 교단 내부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제3자를 상대로 대표자의 법률행위를 할 때는 그대로 인정된다. 그 이유는 교회 정관의 법적 효력 때문이다. 정관은 지교회의 자치법규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한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교회 자치법규를 판단하여 판결한다.

또한 반대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담임 목사의 비위 때문에 대부분 교인은 거부할지라도 소속 노회가 묵인하여 교인들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교회는 그대로 당하고 말 것이다. 이런 때를 대비하여 교회 정관상 특별한 규정을 두었을 때는 그 정관 규정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둘 수 있다.

“무흠 입교인(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으로 담임목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해임과 교단 탈퇴를 위한 청원을 당회장(혹은 임시 당회장)에게 요구하였으나 2주간 이내에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할 때 소집 청원자 대표가 직권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관련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정관을 규정할 경우, 이는 법원에 의해 인정된다. 물론 이러한 정관 규정 역시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 때문이다. 이를 거부하려면 대법원판결과 민법의 비법인 사단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법리를 내놓아야 한다.

노회가 교단 헌법에 따라 교회의 소속 노회가 지교회의 의지와 상관없이 담임 목사직을 해임 또는 면직할 수 있다면, 교회는 교회 정관에 의해 노회의 결정과 무관하게 담임 목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다. 반대로 노회가 교단 헌법의 노회 권한으로 지교회의 의지와 무관하게 비위가 있는 담임 목사를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노회가 비위 있는 담임목사를 계속 보호하여 그 지위를 유지하게 할지라도 지교회는 정관으로 이러한 비위자를 해임하고 아예 교단을 탈퇴하는 규정을 두었을 때 정관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단지 정관 규정이 없을 때, 지교회는 교단 헌법에 따라 법적인 공동의회 소집권자(담임목사)가 아닌 자가 소집할 수 없으며, 지교회는 담임 목사에 대한 해임권이 없다. 이는 대법원이 지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한다는 판례 때문이다.<sup>2)</sup> 그러나 관련 내용이 정관에 특정할 경우,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으로 접근하지 않고 교단 헌법에 우선한 정관 법

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등 참조.

리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정관이 교회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종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3. 임시 당회장

전술한 대로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담임목사는 교회 대표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없는 때도 있다. 예컨대 담임목사가 개인적으로 사임하는 경우, 담임목사가 소속 노회로부터 해임과 면직을 받을 경우 등이 있다.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노회가 지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이 임시 당회장이 법률행위의 임시 대표자가 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4조 당회 임시 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sup>3)</sup>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전술한 대로 원칙은 담임 목사가 의례히 당회장이 된다.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장로는 당회장이 될 수 없다. 교회가 특별한 사정으로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 ‘당회장 될 사람’이란 ‘임시 당회장’을 의미한다. 임시 당회장은 지교회의 요구와 무관하게 **노회 직권으로 파송**한다. 단, 예외가 있는데 **담임목사가 없는데도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 주지 아니할 때 당회가 회집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다**. 당회의 소집권은 임시 당회장임으로 당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시 당회장 될 사람을 노회원 중에서 청하여 그 임시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하여 당회 회무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의 임시 당회장은 회집할 때마다 청하는 데 이는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 아닌 당회원이 청한 임시 당회장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결위) ‘임시 당회장’**이란 두 종류가 있으며, 첫째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 둘째 **노회가 파송해 주지 아니할 때 당회원이 청한 임시 당회장이 있다**. 위의 첫 번째 임시 당회장은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시무하는 임시 당회장**이며, **당회원이 청한 임시 당회장은 일회성 임시 당회장**이다.

#### 1) 임시 당회장의 시무 기간

담임목사가 없을 때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한 임시 당회장은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시무한다. 간혹 임시 당회장은 자신이 오랫동안 임시 당회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후임 담임목사 청빙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교인들은 서명을 통해 소속 노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임시 당회장을 교체해 주든지, 아니면 기간을 명시하여 후임 담임목사 청빙 절차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요구할 수 있다. 노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며, 노회를 위해 교회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런 문제를 예방

3)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없는데 어떻게 당회를 소집하여 당회 결의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본 규정은 문제가 있다. 통합 측 교단은 이 경우,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당회가 아닌 당회원으로 규정한다.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관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당회(임시 당회장, 장로)가 3개월 이내에 담임목사를 청빙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공동의회 의장 없이 무흠 입교인(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서명자가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 의장을 선정하여 관련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임시 당회장은 자신의 가장 큰 임무가 교인들의 뜻에 따라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하여 노회에 승인받아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임시 당회장 파송 주체

임시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없을 때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라고 했다(정치 제9장 제4조). 여기 파송되는 ‘당회장 될 사람’은 당회장 그 자체가 아니고 당회장의 역할을 한시적으로 대신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인 임시 당회장을 의미한다. 당회장 될 임시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다. 다음과 같은 규정은 이를 더욱 확증해 준다.

“노회는 허위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위원 혹은 특별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정치10장 제6조 제7항).

임시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하는데 정기노회, 또는 임시 노회에서 파송한다. 각 시찰위원이 본회에 보고를 통해 허위교회(담임목사 없는 교회)에 임시 당회장 배정을 보고하여 허락받는 형식으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

그러나 “시찰위원 혹은 특별위원”에게 허위교회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 교단 헌법은 담임 목사 없는 교회에 자동으로 시찰위원이나 특별위원이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것은 아니다. 노회 규칙이나 노회 결의로 “노회 폐회한 후 담임목사 없는 교회에 임시 당회장은 시찰위원이 파송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노회 폐회한 후 담임목사 없는 교회에 임시 당회장은 임원 이사부(혹은 정치부)가 파송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나 노회 결의가 없음에도 노회 임원 이사부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경우 무효가 된다. 노회가 파송했다고 주장한 임시 당회장이 해당 교회 당회를 소집하고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그 임시 당회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송할 경우, 그 임시 당회장이 당회나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은 다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사례는 분쟁교회의 법원 소송에서 일어나고 있다.

## 3) 개임(改任)의 법률개념 위반의 문제

임시 당회장 파송은 해당 교회에 담임목사가 없거나 있어도 그 담임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 그러나 담임목사 지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은 위법하다. 특히 시무 중인 담임목사를 조사하면서 그 담임목사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는 행위는 위법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임시 당회장은 “담임 목사가 없을 때 파송”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담임 목사 문제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요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현재 시무 중인 담임목사를 정지시키고 파송해야 한다. 노회가 이

미 당회장으로 담임목사를 위임하여 파송해 놓은 상태에서 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이는 당회장을 정지하지 않고 새로운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결의는 개임의 법률위반이 되어 법원 소송에서 무효가 되는 사례들이 있다.

정리하면 허위교회가 아님에도 임시 당회장 파송은 위법이다. 당회장의 결원, 즉 담임목사가 없는 상태에 있을 때만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노회가 담임목사(당회장) 사임 결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면 두 사람의 당회장이 존재하여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두 사람이 되어 버린다. 이런 이유로 담임목사에 대한 노회의 사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노회 서기에게 사임서가 제출되면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는 규칙과 노회 결의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이때 파송 주체는 시찰 위원인가, 임원 임사부(정치부)인가를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교단 헌법은 시찰회는 없으며, 시찰위원이 있을 뿐이다. 노회가 시찰회에 임시 당회장 파송을 위임했다면 이 역시 인정되고 있다.

#### 4) 임시 당회장의 권한

임시 당회장은 후임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한시적으로 파송한 목사로서 시무목사는 아니다. 구체적으로 임시 당회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시 당회장은 담임목사와 동일한 권한이 있다.**

총회는 헌법 유권해석에서 임시 당회장은 담임목사와 동일하다며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했다.

동대구노회장 이종덕 씨가 헌의한 노회에서 파송한 당회장의 권한에 대한 한계 질의 건은 헌법대로 (정치 9장 4조, 담임목사가 갖는 권한과 동일함)하기로 가결하다(제100회 총회 결의)

동일하다고 해 놓고 임시 당회장이 후임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투표권이 없다는 다음과 같은 결의가 있다.

“임시 당회장에게 지교회의 목사 청빙 투표권이 있는지 질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제103회 총회 결의)

공식적인 법적 임시 당회장이 후임 담임목사 청빙시 투표권이 없다는 것은 총회 결의의 흠결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임시 당회장은 재판권이 없다.**

지교회 재판권은 당회의 직무이다. 임시 당회장 체제하에서 당회는 권징재판에 관한 처리권이 없다. 또한 권징재판 처리권에 준한 행정처리권인 해임이나 권고 휴직 내지 사임, 사직도 결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교단 헌법에 의한 장로회 정치원리는 지교회 교인들의 기본권과 노회가 위임하여 파송한 목사의 처리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치제도이다. 교인들은 자신들의 대표자인 장로에게 기본권을 위임한다. 위임하는 법적 행위가 장로 임직식 때 교인들이 임직받은 장로에게 ‘복종서약’이다.<sup>4)</sup> 이 복종서약은 ‘협력’이라는 말과 다른 법적 용어이다.<sup>5)</sup>

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 제15장 제11조 2항.

5) 제108회 총회 표준예식서 위원회는 교단헌법의 위임목사, 장로임직시 서약문답에서 ‘복종’ 서약을

‘복종서약’이란 기본권을 가진 교인들의 권한을 대표자인 장로에게 위임하는 자치 규범이다. **교인들로부터 이러한 위임받지 않는 장로는 해당 교회에서 당회원과 치리권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교단 헌법은 장로를 ‘시무장로’라 하지 않고 ‘치리장로’라 한다.

마찬가지로 노회가 위임하여 파송한 담임목사는 교인들로부터 치리권에 대한 복종서약을 받지 아니하면 권징재판권이 없다. 이런 뜻에서 임시 당회장과 그 당회는 교인의 1심 권징재판은 중지된다. 치리장로인 장로들이 교인들로부터 기본권에 대한 위임을 망각하고 자신들과 정치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총회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단 헌법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시 당회장 재판권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재판권이 없음).**”(제103회 총회 결의).

위와 같은 총회 유권해석은 필자가 노회를 통해 총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건이다. 청원 원안은 노회에서 재판권 문제가 아니라 지교회에 파송 받은 임시 당회장에 관한 질의였다. 또한 조직교회 시무목사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에게 재판권이 있느냐에 대한 질의였다. 총회는 지교회 교인들로부터 치리권에 대한 복종서약(위임식 때)을 받지 아니하면 재판권이 없다는 중대한 장로회 정치원리와 교단 헌법의 통일성에 근거한 답변이다. 노회에서 시무목사가 재판권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협력’ 서약으로 번개해 버렸다. 교단헌법에 반한 표준예식서의 관련 내용은 효력이 없다.

**셋째,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임시 당회장 파송은 불가하다.**

미조직교회란 당회가 조직되지 않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한 교회 임기 3년의 시무목사가 다른 조직교회에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는가? 총회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위임받지 않은 시무목사가 임시 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제103회 총회 결의)

**넷째, 정년 이전 원로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다.**

총회는 “정년 이전 원로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다.”라고 했다(제106회 총회). 여기서 언급한 당회란 타교회인가? 본인이 은퇴한 교회인가? 이러한 구분 없이 결의했다. 하지만 **노회는 본인이 은퇴한 교회에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고 결의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제108회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 때 문이다.

“**강중노회장 황남길 씨가 헌의한 정년이 지난 은퇴목사가 후임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임시 당회장의 위임으로 계속 목회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제106회 총회 결의는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가 본인이 은퇴한 교회에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을 하면 그 은퇴한 목사가 해당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설교권 등 목회하게 된다. 그러나 후속 결의인 제108회 총회는 은퇴한 목사는 은퇴한 교회에 목회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는 권한

을 갖춘 노회는 정년 전 원로목사의 임시 당회장 파송을 본인이 은퇴한 교회에는 파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노회 권한으로 결의하면 된다.

#### 다섯째, 원로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 의장은 임시 당회장이다.

교회 담임목사가 정년 전에 은퇴하는 경우와 정년으로 은퇴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후임 담임목사 청빙은 담임목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후임 담임목사 청빙은 후술한 바와 같이 대리 당회장이 아닌 임시 당회장이다. 임시 당회장은 당회와 무관하며 오직 노회 직권으로 파송한다.

**“위임목사는 사임 전에 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사회를 볼 수 없다.”(제104회 총회 결의)**

정년 전 은퇴 후 원로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 투표시 반드시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회는 사임서가 노회에 제출됨과 동시에 누구를 어느 부서 및 위원회에서 파송할 것인지에 대해 노회 규칙이나 결의로 확정해 두어야 한다. 정년으로 원로 목사 추대시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년 후에 원로 목사 추대는 당연히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년 직전에 원로 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 역시 정년 은퇴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겠으니 노회에 임시 당회장 파송을 요청받아 그 임시 당회장에 의해 원로목사 추대를 결정해야 한다.

후임 담임목사 청빙은 현재 담임목사가 정년 전 은퇴의 경우, 사임서가 노회에 제출한 후에 후임 담임목사 청빙투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은퇴를 반복해 버릴 수가 있다. 단 정년 은퇴로 원로 목사 추대나 후임 담임목사 청빙은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어야 한다. 정년 전 1개월 전에 원로목사 추대를 위해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했다면 그 1개월간의 해당 교회 당회장은 임시 당회장의 권한이다. 이를 노회가 분명히 하여 원로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위해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노회가 사전에 분명히 노회 규칙, 또는 노회 결의로 확정해 주어야 한다.

#### 여섯째, 임시 당회장은 등기상 부동산 대표자로 등기를 변경할 수 없다.

교회 정관에 “교회 부동산 등기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담임목사 외에 등기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이는 법적이 문제이다.

**정리하면 원로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는 사임을 전제로 하며, 이 경우 담임목사 없는 상태에서 임시 당회장에 의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원로목사 추대 결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예견하고 사전에 교회 정관이나 노회규칙으로 특정하여 규정해야 한다.**

## 4. 대리 당회장

임시 당회장은 해당 교회에 담임목사(당회장)가 없는 상태에서만 파송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대리 당회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 1)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의 대리권

임시 당회장은 담임목사(당회장)가 없는 교회에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한다면, **대리 당회장은 노회**

가 파송하는 것이 아닌 해당 교회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당회장이 되게 한다.

대리 당회장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정치 제9장 제3조 당회장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노회가 이미 해당 교회에 당회장을 파송했으므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단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회장이 특별한 경우, 당회장을 대리할 수 있는 목사 1인을 청하여 그에게 당회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회무를 진행하도록 하는 대리권 위임이 대리 당회장이다. 이 대리 당회장 제도는 담임목사(당회장) 본인에 관한 문제나 특별한 사정인 신병이나 출타 중에 청하는 당회장이다.

대리 당회장은 당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당회장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청하는 자는 현 당회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는 당회가 간섭하거나 특정인을 요구할 수 없다. 오직 당회장이 위임하는 대리권이므로 당회장이 선정하여야 한다.

### 2) 대리 당회장의 시무 기간

당회가 대리 당회장을 청하기로 결의할 때는 그 시무 기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관련 해당 당회와 공동의회로 제한한 일회성인가? 아니면 기간을 명시하여 언제까지 대리 당회장직을 수행하게 할 것 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리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해서는 안 된다. 이는

노회가 위임하여 파송한 현 시무중인 당회장의 권한 침해이다. 대리 당회장은 당회와 당회장의 헌법적 권한이므로 노회가 임의로 대리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단지 노회는 담임목사(당회장)가 없을 때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뿐이다.

### 3) 대리 당회장 재판 권한

총회재판국원은 총회 총대 중에서 선정하고(권징조례 제134조) 노회 재판국은 노회 관내 목사와 장로(권징조례 제117조)중에서 선정한다. 당회는 재판국이 아닌 재판회로 존재한다. 당회가 재판회가 되어 재판하는 데 당회 구성원인 당회장(담임목사, 위임목사)과 당회원인 장로가 재판한다.

당회 재판회의 당회장은 위임목사 외에 조직교회 시무목사나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임시 당회장, 대리 당회장은 재판권이 없으므로 재판을 할 수 없다. 이유는 당회의 재판회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교회 교인들로부터 치리에 대한 위임, 즉 복종서약을 받은 자들만이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위임목사(정치 제15장 제11조 제2항)와 치리장로(정치 제13장 제3조)만이 재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당회 재판회에서 재판권은 위임목사와 치리장로만이 가능하다. 타 교회 장로는 더더욱 불가하며,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당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권 자체가 없다.

또한 조직교회 위임목사가 아닌 시무목사로 청빙 받은 목사는 당회가 존재하지만, 교인들로부터 기본 치리권에 대한 위임, 즉 복종서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권이 없다. 이는 1심 재판이 불가하여 교인들이 1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중지된다.

대리 당회장의 재판권에 대해 제104회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총회가 승인한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전북노회에서 제출한 대리 당회장의 재판권에 대한 질의건은 제103회 총회에서 시무목사와 임시 당회장의 경우에도 재판권이 없다고 결의한바, **대리 당회장도 재판권이 없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제105회 총회 보고서, 110쪽).

이같은 유권해석은 제105회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도 이 결의가 제105회 총회에 보고하여 확정되기도 했다. 위의 제105회 총회 결의는 노회 재판국원을 의미하지 않고 지교회 당회 재판회의 재판권을 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유권해석은 **위임목사 아닌 시무목사와 임시 당회장, 대리 당회장이 노회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교회에서 재판권이 없다는 의미이다.**

대리 당회장이 지교회에 임시로 당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당회에 고소·고발된 소송 건을 재판할 수 없다. 기다렸다가 위임목사가 당회장직에 복귀할 때 재판하든지, 노회에 위탁하는지 하여야 한다. 담임목사가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며 대리 당회장을 청하여 당회 재판을 하는 것은 권한 없는 자가 재판하였으므로 이는 원천 무효이다.

### 5. 시무목사 계속 청빙 청원 당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교회헌법(교단헌법)에 미조직 교회 시무목사의 임기 3년 종료 후 계속 시무 청빙 절차에 대해 제105회 총회에서 유석 해석을 했다. 이 유권해석은 총회가 총회임원회에 각종 질의 대한 답변권을 부여함에 따라<sup>6)</sup> 제104회

6) 제102회 총회 결의(2017)

마. 총회파회 이후 업무처리 관련

-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현의한 총회 파회 이후 임원회, 상비부, 위원회, 이사회의 역할(임무, 권한,

총회 임원회는 시무목사 계속 청빙 절차를 제105회 총회에 보고하여 확정되었다.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에 대한 관련 헌법 내용과 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다.

미조직교회에서 시무 목사 시무 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정치 제4장 제4조 제2항).

미조직교회는 3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정치 제15장 제12조 제1항).

“중서울노회장 강조훈 씨가 현의한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시무기간 연장 청원의 건(임시 당회장 적격 문제)은 총회결의 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본인 이외의 노회 파송 임시 당회장).”(제102회 총회 결의).

위와 같은 결의는 제105회 총회에서 분명히 하여 유권해석을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포노회 질의에 대하여는

가. 시무 연기 청원은 임기 3년이 마치기 전에 청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 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을 주었을 경우, 대리

책임)에 관한 건과 · 목포서노회장 모상규 씨가 현의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현의의 건과

-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현의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현의의 건은 파회 후 총회 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

당회장으로 시무 연기 청원을 할 수 있으나 당회장 권을 주지 않았을 경우 노회 파송 당회장으로 공동의회를 실시한 후 시무 연장 청원해야 한다.

다. 단, 3년의 임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노회 파송 당회장으로 공동의회를 실시한 후 **시무 연장 청원해야 한다**(제105회 총회 보고서 113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임기는 3년이며, 반드시 임기 3년 전에 청빙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2. 노회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을 주었다면 대리 당회장이 시무 연기청원을 해야 한다. 이때에는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시무 기간이 종료되기 전, 아직 당회장권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시무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이때는 대리 당회장으로 청원한다. 대리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아니라 본인이 노회 내 한 사람을 청하면 된다.

3. 노회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을 부여하지 않고 시무권만 주었을 때는 3년 임기 종료 전에 노회의 파송 당회장을 통해 계속 시무 청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의회를 통해서 노회에 청원한다.

4.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임시인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노회 파송 당회장으로 공동의회를 실시한 후 시무 연장 청원을 해야 한다. 사실은 이 경우는 새로운 시무목사 청빙 절차인데 연장 청원이라고 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부분으로 시무목사 임기가 종료되면 무임목사가 되어 해당 교회와 무관한 자

가 된다. 대표권이 없다. 그러나 총회 유권해석은 3년 임기 종료 후 무임목사가 아닌 계속 시무청빙 대상자로 했다. 어느 쪽 해석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문제 해결이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더욱 분쟁을 가져온 총회 유권해석으로 교회 정관으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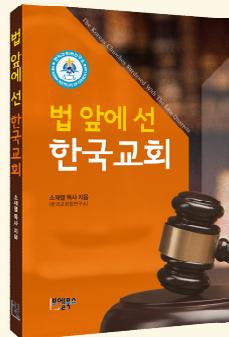
## 6. 결론

지금까지 장로회 정치원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안에서 개별교회(지교회) 대표자에 대한 문제가 늘 논란이 되어 왔다. 대표자인 담임목사와 담임목사인 당회장을 대리한 대리 당회장, 담임목사가 없을 때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한 임시 당회장은 지교회의 임시 대표자가 되는 등 중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교회가 분쟁중일 때 대리 당회장, 임시 당회장과 교인들과 갈등관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제 특별한 경우, 교회 정관으로 교인들에 의해 공동의회를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해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회는 교회법과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각 법령들에 노출되어 있다. 교회에 적용된 이러한 각

종 법령들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원리와 원칙이 된다. 이러한 원칙에 충실한 이유는 교회를 건상한 운영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소재열 지음, 브엘복스권, 224쪽 정가 13,000원)

구입 문의 : (031) 984-9134 (한국교회법연구소)

## 재판받으신 예수님(막 14:62-65)

김순정 목사 (말씀사역원 본부장)

### 목 차

- 체포되신 예수님(43-50)
- 재판받으신 예수님(53-65)
  - 첫 번째 재판
  - 두 번째 재판
  - 세 번째 재판
  - 네 번째 재판
  - 다섯 번째 재판
  - 여섯 번째 재판

- 예수님의 자기계시
  -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
  -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계시하셨다.
  - 예수님을 자신을 재판주로 계시하셨다.

결론

#### <요약>

예수님의 재판은 법을 공부하는 법학대학원의 강의실에서 예시로 사용될 정도로 유명한 재판이다. 교회는 이 재판의 사건을 통해서 공정과 공평, 정의라는 주제를 찾기보다는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해야 한다. 총 여섯 차례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메시아(그리스도)이시며, 또 다시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재판주이시다.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경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론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사형시키려 했다.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계시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받으신 재판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 김순정 목사 / 한국성서대학교(신학, B.A),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수학,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목회학, M.Div.),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조직신학, Th.M.), 현재 새사랑교회, 리폼드뉴스, 말씀사역원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저서로는 「하나님의 구속역사 관점으로 성경읽기」(브엘북스, 2019), 「구속역사적 성경연구 모세오경」(브엘북스, 2023) 등이 있다.

미국의 켄터키주에 사는 신디 멀린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신장 결석 수술을 받기 전에는 두 아들의 엄마로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 혈관막힘을 방지하려 스텐트를 삽입했습니다. 수술 후 스텐트를 빼내자 메스꺼움을 느끼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혈압이 31까지 떨어지고 쇼크가 왔습니다. 다리와 팔에는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감염으로 팔다리를 잘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괜찮을 거야. 너는 살아 있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재활 치료를 받고 의족을 끼고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1. 체포되신 예수님(43-50)

예수님께서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가 무리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겠다고 했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유다는 그들과 군호 즉 ‘군대의 암호, 신호’를 짜고 왔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입을 맞추며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보고 “랍비여”라고 하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

을 체포했습니다. 그때 곁에 섰던 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 버렸습니다. 요 18:10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요 18:10)

예수님은 체포될만한 죄를 지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치 강도나 살인자를 체포하듯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문은 ‘그 이유는 그 성경들을 이루기 위해서이다’(ἀλλ’ ἵνα πληρωθῶσιν αἱ γραφαί)라고 되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에게 체포되신 것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것들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들이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9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사 53:8-9)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에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도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거짓된 복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죽여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역사의 성취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가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슥 13:7)

## 2. 재판받으신 예수님(53-65)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체포되었습니다. 이 밤이 목요일 밤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토요일(안식일)이면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반드시 사형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리해서라도 억지로 재판을 벌이고 사형선고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53)

밤중에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6차례 재판을 받으십니다.

### 1) 첫 번째 재판

4복음을 분석해 보면 요 18장에 날이 새기 전에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가장 먼저 재판을 받으십니다. 당시에는 대제사장 제도가 변질되어서 임기를 마친 후에도 그 권력이 대단했고 그래서 재판을 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2) 두 번째 재판

그리고 두 번째는 마 26장, 막 14장 오늘 본문에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로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 그를 죽여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불법재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진 후에는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해가 뜬 후에 여는 재판이 정식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나스의 심문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 재판에서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불법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사 53:7)

우리 성경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라고 번역해서 이사야 당시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은 미완료형(יָמַח פִּי וְלֹא יָדַבַּר)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예언입니다. 이 예언처럼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불법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 3) 세 번째 재판

셋째는 마 27장, 막 15장, 눅 22장에 기록된 산헤드린공회의 재판으로 해가 뜬 후에 열린 재판입니다. 여기서부터 정식 재판입니다.

### 4) 네 번째 재판

넷째는 마 27장, 막 15장, 눅 23장, 요 18장에 기록된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 5) 다섯 번째 재판

다섯째는 눅 23장에 기록된 분봉왕 헤롯 왕의 재판입니다.

### 6) 여섯 번째 재판

여섯째는 요 18-19장, 마 27장, 막 15장의 기록된 빌라도의 최후의 재판입니다.

## 3. 예수님의 자기계시

본문의 재판은 두 번째 재판 즉 가야바의 재판으로 밤에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와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종들 혹은 경비병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었습니다. 그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자 잡힐 것을 두려워해서 멀리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56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 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

하지 못함이라.”(55-56)

대제사장들과 온 산헤드린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시킬 죄목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나온 증인들은 다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고 예수님에게 거짓 죄를 덮어 씌우려 한 자들입니다. 증인들이 나서서 저마다 증언을 했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즉 증인들 스스로가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짜고 치는 재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 하여 이르되 58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59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57-59)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님께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지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모독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성전은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만들게 하신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벰엘과 단에 금송아지 신당을 세웁니다. BC 722년에 앗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고 그곳에 있던 자들이 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성전

입니다. 이들은 사마리아의 그리스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유일한 성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서로를 원수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 성전을 짓는다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매우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60-61)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증인들의 말이 사실이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재판은 해가 진 후에 열린 불법재판이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한 구약성경 이사야 53:7절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동일한 재판을 기록한 마 26:63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고 말하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이행해야만 했습니다. 그

래서 하신 대답이 본문 62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62)

1)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62절에 “내가 그니라”로 번역된 이 문장은 ‘나는 항상 있는 자이다’(ἐγὼ εἰμι)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출 3:14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 호렙산 가시떨기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אֲנִי אֲשֶׁר אֲנִי)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을 명사형으로 바꾸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LXX)에는 예수님의 대답처럼 ἐγὼ εἰμι로 되어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2)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라는 표현은 단 7:13-14절의 예언대로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분이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권능자이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3) 예수님을 자신을 재림주로 계시하셨습니다.

62절 후반절에 보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장차 부활, 승천하신 후 정한 때에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메시아이며, 재림주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62절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증인도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곳에 모인 자들은 대제사장의 이 선언을 듣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했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경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론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사형시키려 했습니다. 오늘날도 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하고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따라서 없는 죄도 만들어서 씌우고 자기가 원하는 형벌을 선고하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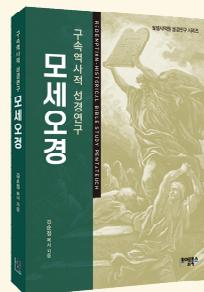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면 앞드려 경배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놀리고 조롱했습니다. 또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원문에는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며’(ἐμπύειν, κολαφίζειν)가 현재형으로 한 번만 뱉고 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러 명의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며 온갖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 결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아니었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믿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속역사적 성경연구 모세오경**

지음 김순정 목사 주문 말씀사역원 편집, 브엘복스 간(010-2838-5944)



## 총신대학교와 안양대학교 법인정관 비교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으로 넘어간 안양대학교,  
총신대학교도 다르지 않다.

안양대학교는 장로회신학교로 출발하였으며 기독교 사학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안양대학교의 운영권이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안양대학교 내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은 이제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이 운영하는 법인과 학교가 되었다. 이제 안양대학교 신학과 출신이나 신대원 졸업자는 더 이상 기존 각 교단 신학교에 편입할 수 없게 되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안양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우일학원 법인 이사들이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 인사들로 채워지도록 종전 이사들이 결정해 줘 버린 것이다. 그냥 넘겨주었겠는가? 돈만 많이 주면 교회당도 이단들에게 넘기는 세상이 아닌가? 법인정관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 이런 형태의 법인정관은 총신대학교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회 정관 역시 안양대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총신대학교를 제외한 통합 측 장신대 등 각 교단 신학교는 다 법인정관을 통해 안전장치를 해 두었다. 유독 총신대학교만 안양대학교와 같다. 총회 직영신학교이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현 이사들이 총신대학교를 장악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올해 9월 제109회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 총신대학교만 왜 유

독 안양대학교와 같이 그냥 둘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법리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 1.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으로 넘어간 안양대학교

안양대학교의 전신은 1948년 남대문교회에서 세워진 장로회신학교(초대 교장 윤필성 목사)로 출발한다. 이어 1949년 1월에는 제2대 교장으로 김치선 박사가 취임하고 신학교 명칭을 대한신학교로 변경했다. 이 신학교는 오늘날 안양대학교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 안양대학교는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이 있다. 그런데 안양대학교 운영권이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에 넘어가 충격을 주고 있다.

안양대학교는 학교법인 우일학원이 설치·경영하고 있다. 안양대학교의 건학이념은 “‘한구석 밝히기’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에 주어질 한구석을 책임지고 밝혀 나갈 때, 개인으로서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고, 공동체 전체는 건강하고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이념으로 이에 부합하는 사람을 한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배출하는 학교이다.

그러나 이 학교법인은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 인사인 문순권 이사장(재단법인 대진문화장학재단 이

사)이 지난 2022. 11. 16.에 우일학원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는 이사회에서 문순원 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진 이사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으로 그 운영권이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를 사고파는 매각 대상이 아니다. 단지 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에 따라 대학교의 운명이 결정된다.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 홈페이지에 의하면 ‘교육사업’으로 “상생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성(誠), 경(敬), 신(信)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으로 국민윤리도덕과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하는 건실하고 참된 인재를 육성한다. 또한 대진문화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청소년의 학업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학술연구활동을 장려하여 국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진대학교, 중원대학교와 함께 다음과 같이 안양대학교를 소개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 (안양동) 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602-14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교로 신학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창의융합대학 등 5개 단과대학, 19개 학과를 설치하고 있으며, 강화캠퍼스에 사회과학대학과 창의융합대학의 일부 전공과 4개 학과를 편제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으로 일반대학원을 비롯한 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글로벌대학원 등 4개 특수대학원이 편제되어 있다.”

안양대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우일학원 문순권 이사장은 안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인사말을 통하여 대순진리회 성주회의 이념에 충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안양대학교는 기존의 실천·창의·인성 인재 양성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기 위하여, ‘성(誠)’, ‘경(敬)’, ‘신(信)’의 상생 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성(誠)’, ‘경(敬)’, ‘신(信)’의 상생 교육 정신이란, 지극한 마음(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첨단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를 육성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며, 도리와 예법(敬)으로 인간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교육의 장을 열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한결같은 믿음(信)으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지도자를 육성해 평화로운 상생공동체 건설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양대학교를 운영은 학교법인 우일학원 법인 이사회는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 인사가 의결권을 장악하게 되어 안양대학교는 대순진리회 성주회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우일학원 법인 이사회는 정관을 ‘대순진리회 성주회’ 소속으로 변경할 것이다. 지금은 법인정관 제1조(목적)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교육·실천하여 고매한 인격을 함양하고...”라고 기독교라는 설립 이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설립 목적에 대한 법인정관으로 변경될 것이다.

지금은 안양대학교의 설립 이념을 기독교적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문순권 이사장의 인사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의 이념을 안양대학교의 설립 이념으로 변경하리라는 것을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안양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우일학원의 법인 이사회 정관 때문이다.

이사선임은 이사회가 추천하여 선임하는 법인정관을 두고 있다.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 방법) 제

1항에서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조 2항에는 “이 법인의 개방 이사는 건학이념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여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정관변경 역시 이사회 결의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관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권이 과반수 이사를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 인사로 대치하고 정수 3분의 2 이상만 되면 정관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을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으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기독교적인 이념으로 설립된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안양대학교는 그동안 기독교 교단과 단절되어 운영해 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교단과 안양대학교는 신학대학원과 상호 인준 관계일 뿐이었다. 대신 교단은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과 별도로 총회 직영으로 무인가 대신총회신학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대학교는 학교법인 우일학원 법인정관에 의해서 운영하므로 법인 이사장과 이사의 다수 측이 얼마든지 운영 주체에 따라 설립 이념과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따라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회의 이사장은 특별한 어떤 조건에 따라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의 인사로 선임해 주었을 것이고, 그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 인사로 선임하여 자연스럽게 학교법인 우일학원과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회 성주회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계속 기독교 사학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세대학교는 일부 중요한 부분의 정관 내용을 ‘불변조항’으로 하여 대순진리회 성주회 같은 곳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

안양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우일학원 법인

정관이 총신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법인정관과 너무나 흡사하다. 우일학원의 정관으로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으로 그 운영권이 넘어가듯이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법인정관도 얼마든지 총회 직영신학교를 포기하고 다른 단체 내지는 사유화로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점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총신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교단 산하 직영신학교 법인정관은 잘 갖추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무엇이 문제인가?

총신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법인이다. 이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가 설립했으며, 총회 교역자 양성으로 설립된 총회 직영신학교이다. 총회의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신학교를 설립하고 무인가 신학교로 운영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국가로부터 학교법인을 설립 허가받고 그 법인이 신학대학교를 운영하는 법률적 구조로 되어있다.

총신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설립했고 그래서 총신대를 총회의 직영신학교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현재 법인 정관 제1조 목적에 의하면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이하 ‘본 총회’라 한다)의 직할 하에 성경과 개혁신학과 본 총회의 헌법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다.

이러한 법인의 설립 목적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이 총회가 학교법인과 총신대학교를 직접 관할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설립 목적도 이사들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해 버릴 수 있다.

현재의 법인정관에 의하면 정관변경은 이사들의

고유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인 정관변경은 이사 정수 15명 중에서 10명만 확보하면 총회의 관여 없이 얼마든지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과거 총신대 사태시 이사회가 임의로 총회와 무관한 정관으로 변경해 버린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의 정관변경과 임원(이사) 선임에 대한 이사회 독립성은 유지하되 사전에 총회의 승인이란 절차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하는 형식의 정관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면 총회는 학교법인 앞에서 허수아비일 뿐이다.

통합 측인 장신대처럼, **“이 법인의 정관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형식으로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정관변경은 법인 이사회 독립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사전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이사회 정관변경은 총회의 사전인준 없이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총회의 직영신학교의 위치를 굳건히 하는 법률적인 안전장치다. 또한 이사선임 역시 법인정관에 의한 이사회 고유권한이다. 기존 이사들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때 자신들이 추천하여 자신이 선임하는 형식의 법률구조로 되어있다. 이사회 마음대로이다.

이 부분 역시 총회와의 관계를 위해 법인정관에 통합 측 장신대학교 처럼 **“이사와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 등 인적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파송이사 7인, 2. 동문회 파송이사 1인, 3. 총장(당연직) 1인, 4. 유지이사 2인, 5. 개방이사 4인”** 등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법인정관은 이사 정수 15인 가운데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 파송이사 7인”으로 하였으며, “동문회 파송이사 1인“ 등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런 규정은 이사회가 총회와 무관한 학교 운영은 불가능하도록 법인정관에 이를 성문화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와 총신대학교의 관계 설정이 이렇게 통합 측과 장신대처럼 할 수 없는가? 총회의 직영신학교인 총신대의 학교법인 이사회가 총회와 무관한 절대권력을 이사회가 갖도록 하는 정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할 때는 또 다른 사태를 얼마든지 예견해 볼 수 있다.

현 총신대학교 이사나 이사장은 환상적인 자기 의로움으로 전국교회와 총회를 현혹하지 말고 법인정관부터 개정해야 한다. 총회와 유관한 정관으로 변경하지 않고 전국교회에 총신을 위해 도움을 호소하는 것은 경우가 아니다. 먼저 이사회가 할 일부터 해 놓고 도움 호소는 그다음부터이다. 현 이사장과 이사들은 과거 총회와 무관한 방향으로 정관을 변경했던 이사들보다 더 훌륭한 천사와 같은 사람은 아닐 것이다. 다 똑같은 인간의 권력 욕구에 의한 본능은 별반 다르지 않다. 더 무서운 권력 욕구의 본성이 잠재할 수도 있다.

총신대 법인 이사를 증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증원한 법인 이사의 추천권이 정관에 누구로 되어 있느냐가 관건이다. 현 이사들이 자기가 자신을 추천하고 자파 사람을 추천하여 이사를 증원해 버리면 신학교는 또 다른 사유화의 가는 발판을 마련할 뿐이다. 현재는 총회가 총신대학교에 대해서만 큼은 허수아비이다. 총회를 허수아비로 해 놓고 총회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슨 명목으로 전국교회에 순회하면서 도움을 호소할 수 있겠는가?

법인 이사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총회와 관계 속에서 법인 정관을 개정해야 할 것인지 그 당위성부터 인식하고 학습해야 한다.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인기 발언이 문제가 아니다. 법인정관 설립 목적(제1조)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각론 개정을 착수해야 한다.

후손에게 넘겨줄 총신대학교를 총회와의 관계 속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속히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이 일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일찍 사임하는 것이 총회와 전국교회 앞에 양심적인 행동이라 생각된다.

### 3. 총신대는 안양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법인정관은 이사들이 총회와 무관한 정관변경, 이사선임으로 독자적인 사유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정관이다. 왜 다른 교단 직영신학교처럼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현 이사들이 과거에 문제를 제기했던 정관변경 주장을 이제 이사가 된 이후에는 정관변경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제 이사회 권력을 장악하다 보니 그 권력에 탐닉 되었다는 말인가?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혹독한 경험을 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종전 총신대 법인 이사회에서 총회와 학교법인과의 관계 하에서 운영하는 운영이사회 제도를 두었다. 그리고 이사는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법인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 결의 방식을 채택했다.

그리고 이사는 본 교단 소속 목사나 장로 중에서 선임하게 돼 있었고 교단 정년제에 따라 만 71세에 도달하면 이사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총회와의 관계 규정을 이사들이 정관변경 권한으로 전면 삭제해 버렸다. 이는 총신대학교 사

유화를 가는 길을 열어 두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 문제는 소위 총신대 사태를 유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사들의 징계 사유를 들어 전원 해임했고 임시이사(관선)와 정이사를 선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변경된 정관을 원상 복원시키고 정관 제1조 목적에 “이 법인은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직할 하에 성과 개혁신학과 본 총회의 헌법에 입각하여...”라고 개정했다.

법인정관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를 총회 산하 기관의 법인임을 분명히 했다. 물론 법인이 총회 산하 기관이라면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총신대학교 역시 총회의 직영신학교임을 천명한 규정이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제부터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선교사들에 의해 평양장로회 신학교가 1901년에 설립되었다. 이어 1923년에 조선총독부로부터 「재단법인재조선야소교장로회선교회신학교유지재단」이 설립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1940년에 일제의 적산관리법에 의해 유지재단 모든 재산은 적산 재산이 되어 버렸다.

장로회는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통합 측과 분열한 후 학교법인은 통합 측에 귀속되었다. 합동 측은 비인가 상태에서 운영하다가 1967년 5월 4일에 법인 설립 승인받은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라는 각종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들은 법인정관에 의해서가 아닌 교육부(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이사로 선임된 자들이다. 정수 15인은 임기 4년인 2025. 4. 8. 모두 임기가 종료된다. 제104회 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에서 총신대 운영이사회 제도가 폐지되었다. 대신 이사를 증원하기로 했다. 운영이사회가 폐지되었으므로 법인 이사선임은 이사회 마음대로

로 선임하게 돼 버렸다.

장신대와 고신대, 침신대 등과 같은 교단총회 직영신학교의 경우, 법인정관에 이사선임과 정관변경을 이사들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으로 총회와 관계 속에서 직영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법률적인 교육책이다.

본 교단은 이제 이사를 일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운영이사회 제도를 폐지했으므로 현 정관에 이사 추천권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일정한 인원은 총회가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라는 규정(정관 제20조)대로 하되 정관에 추천권 일부를 총회가 행사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정관변경에 대한 결의 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제아무리 총회와 법인과 합의로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현 법인 이사 이후 어떤 상황변경이 올지 모른다. 과거처럼 이사회 독자적인 결정으로 법인정관을 변경해 버리면 그만이다.

**정관변경을 총회의 선결의 이후 이사회 결의로 변경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이사회 정관변경 정족수인 10명 이상만 확보하면 사유화되어 버린다. 이런 이유로 장신대, 고신대, 대신대 등 종교사학에는 법인 정관변경을 총회 허락 없이 이사회 독자적으로 개정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총신대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다. 운영이사회도 폐지되었으니 이를 분명히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정관개정을 하라는 요구다. 지금 이사들과 현 총회장 역시 기존 교권에 대항하면서 줄기차게 총회와 관계 속에 운영할 수 있는 정관개정을 주장해 왔다. 이제 이러한 주장의 진정성을 보일 때가 되었다.

과거 주변에서 기존 교권에 대해 대항하며 정관

변경을 주장했지만, 이제 교권의 중심에서 과거의 대항했던 주장을 없었던 것으로 한다면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 지금이 적기이다. **현 이사들의 임기는 2025. 4. 8.까지이다. 그 이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변경된 정관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조직해야 한다.** 그 이전에 가장 합리적인 정관변경을 시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이사로 선임해 주셨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 4. 결론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는 하루빨리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총회는 이 부분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 후대를 위해 순교적 각오가 있어야 한다. 안양대학교와 같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변경해야 한다.

##### 1) 법인 정관변경

**제1장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02.07., 2020.09.18>**

위의 규정을 장신대학교와 같이 다음과 같이 변경해야 한다.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인정관에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교단 소속 목사, 장로, 여성 지도자(전도사, 권

사) 중에서 선임한다”(정관 제20조)라는 규정을 두고 있을지라도 나중에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의도를 가지고 이를 변경해 버릴 수 있다. 그러면 대항할 길이 없다. 이것이 종전 총신 10년 사태에서 종전 이사들이 했던 행동 아닌가?

## 2) 이사선임

다음은 두 번째로 임원(이사) 선임 방법이다. 현 총신대 법인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 (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교단 소속 목사, 장로, 여성 지도자(전도사, 권사)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공인회계사 감사는 세례교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09.15, 2018.06.01, 2020.09.18, 2020.12.11, 2021.08.19, 2021.10.05>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은 총회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뜻에 따라 이사를 선임해 버린다. 총회는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한다. 장신대학교 법인은 다음과 같다.

“이사와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파송이사 7인

2. 동문회 파송이사 1인,

3. 총장(당연직) 1인

4. 유지이사 2인

5. 개방이사 4인

동일학교 학교법인이며, 총회 직영신학교인 장신대학교는 총회와 관계 속에서 이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분쟁이 있을 수 있으며, 이사들의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있다.

그런데 총신대학교 법인정관은 아무런 제재 장치가 전혀 없다. 이사만 되면 그들만의 리그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관으로 종전 법인 이사회가 총회와 무관한 정관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때 총회는 그 어떤 대항력도 없었다. 이제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제20조 (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교단 소속 목사, 장로, 여성 지도자(전도사, 권사) 중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파송이사 5인, 이사회 추천 이사 6인, 개방이사 4인으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공인회계사 감사는 세례교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09.15, 2018.06.01, 2020.09.18, 2020.12.11, 2021.08.19, 2021.10.05>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같이 총회 파송이사 5인, 이사회 추천이사 6인, 개방이사 4인으로 정수 15인을 구성해야 한다.

### 3) 법인 해산

법인 해산 역시 이사회 독단적인 결정으로 되어

있는 현 법린 정관을 총회 승인 후 해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현 총신대 법인정관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위 정관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합동) 승인을 받은 후**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총회와 무관하여 법인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면 해산되도록 한 규정은 위험한다. 각 교단 직영신학교는 모두 총회 승인을 전제요건을 규정하는데 유독 총신대 법인 정관만 이사회 독단적인 결의로 해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총신대학교는 총회의 교권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담임목사가 당회원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듯이 당회를 통해 모든 규정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사 개인의 독단적인 규정과 행정이 문제가 있듯이 총신대 역시 총회의 교권을 무시하고 이사회 독단적인 정관내용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안 된다. 총회 정치교권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것은 총회 간섭없이 이사회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제 원점에서 다시 무엇이 총신대의 미래를 위한 길인지를 확인하고 정비해야 한다.

**교**회는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가 세상에 존속할 동안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한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믿는 자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귀며 이웃을 섬긴다. 믿는 자들이 교회로 모일 때 직임을 맡는 자들이 필요하다. 가르치며 치리하는 목사, 치리하는 장로, 구제를 위한 집사,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권하는 권사 등이 있다. 한결같이 섬기는 자들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교회는 서로 누가 교회의 교권을 장악할 것인가에 대한 투쟁의 장이 되고 말았다. 특히 교회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재산으로 축적되면서 그 재산으로 인한 분쟁은 서로를 정치하며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재판을 장악하느냐가 쟁점이 되는 싸움판이 되어 버렸다.

특히 교인들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 또한 목사와 장로의 갈등 등은 곧 교회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분쟁시 당회와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를 누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장악하느냐가 관건이 되었다. 교인들이 당회장과 임시 당회장을 통하지 않고 교인들에 의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길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 결정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을 통하지 않고도 해결하는 방법은 교회 정관에 “특별한 경우, 소집권자 없이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임시 의장을 선임하여 관련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정관 규정을 둘 수 있다.

이러한 정관을 가진 어느 교회 재판에서 이러한 정관이 인정되었다.

## 대법원, 지교회 교단탈퇴 의결정족수

민법 제42조 1항 단서조항 적용 판례

교회 분쟁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50년 동안 유지했던 판례법리를 변경한 때가 2006년이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이때 판례법리는 종전 교회 분열인정에서 불인정으로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였다.

또한 개인이든, 집단이든 교회를 탈퇴할 경우, 종전 교회의 교인 지위가 상실된다. 하지만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이 소속 교단을 탈퇴할 때, 새로운 비버린 사단으로서 신설 교회가 되며, 종전 교회 재산은 탈퇴한 교인들에게 귀속된다.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민법 제42조 제1항에 유추적용하여 교단탈퇴는 정관변경을 초래하므로 교단탈퇴는 정관변경 정족수인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법리였다. 이때 대법원은 민법 42조에 본문에만 적용한 판례법리였다.

하지만 민법 42조 제1항 단서조항에 “다만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단서조항은 해당 교회 정관에 교단탈퇴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으면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대한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고 정관의 정족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2006년 이후 계속된 판례법였다. 이러한 판례법리는 광주 시민교

회 분쟁사건의 상고심(2023다259316 교단 탈퇴 결의 무효확인 소)에서 대법원은 이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소속 교단 탈퇴에 관한 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다.

“교회 정관에서 공동의회의 소속 교단 탈퇴 결의에 관하여 의결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의결정족수 요건이 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에 비해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소극)”의 판례법리였다.

그러나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언급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민법 42조 1항 단서조항을 언급했다.

“다만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피고 교회는 2020. 7. 12.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인원 331명 중 169명이 참석하고 163명의 찬성으로 소속 교단의 탈퇴를 결의”하였다.

원심 판단의 문제는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동의회 결의 정족수 미달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위와 같이 판단한 데에 소속 교단의 변경에 필요한 정족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단탈퇴는 민법 42조 1항의 단서에 의해 적법하다. 그런데 원심은 적법하지 않다고 했으니 이는 법리 판단 오해로 보았다.



김대준 변호사

교회의 아픔을 함께 하며

변호합니다.

### 김대준 변호사의 약속

하나, 현직 목사의 신분으로 교회의 아픔에 동참합니다.

하나, 교회 분쟁 사건은 교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 교회 문제로 많은 승소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 교회를 지키고 구성원의 권리를 중요시 합니다.





# 사랑하며 섬기는 새에덴교회

**다시 본질로!**  
Back to **Essence** Again!

**다시 생명으로!**  
Back to **Life** Again!

**다시 사명으로!**  
Back to **Mission** Again!



담임목사 소강석

“새에덴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도 한국교회의 연합과 세움,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대표적인 영적 역설적 슈퍼 처치입니다.”

소강석 목사는 대한민국 국민훈장, 마틴루터킹 국제 평화상을 수상하고 한국 목회자 최초로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미국 연방의회 의사록에 등재되었으며, 윤동주 문학상을 수상한 목회자요, 현대적 지성과 예술적 감성, 광야의 영성을 겸비한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으로 복음의 사회적 지평을 열어가고 있으며, 교회 생태계와 건강한 사회를 보호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새에덴교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00

TEL 031-896-1000 [www.saeeden.kr](http://www.saeeden.kr)

